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0년12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0.12. 26 평창군수(도시경제과장)
- 나. 회부일자 : 2000.12. 26
- 다. 상정일자 : 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조례특위(2000.12.29)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신영선)

가. 제안 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 · 헌차의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의 상향조정을 반영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안제2조등)
- 새차 ·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규정함(안제37조)
- 주행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함(안 제40조의 3)
-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함(안 제55조)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조정함(안 제7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본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15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정부에 이송되어 있는 법안(2000.12.30일 공포 예정)으로 상위법 시행과 동시 조례를 개정하여 법 안정을 기하고 세율인상분을 즉시 반영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여 금번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새차·현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새율중 제1종 월련 20개비당 460원을 510원으로 하는 세율이 반영되었음.
- 또한 농지세의 부과를 위한 군농지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농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기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자진신고등의 내용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10부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 제4절의 제목,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120일”을 “4월”로, 괄호안의“30일”을 “1월”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leq n \leq 12$)

제38조제1항중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으로 하고, 단서중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3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중 “1월 1일”을 “당해년도 1월 1일”로,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를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의 제목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1호 가목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

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영 제194조의14”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로 한다.

평창군조례 제1587호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고, 단서 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 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